

2021년도
힐링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1. 4. 28. ~ 5. 4.(5일간) / 2018. 1월부터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8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18건 (주의 13건, 시정 5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1건 / 605,00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 》

■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사업 유치 성공

- 힐링관광지 최대 현안, 민간개발사업 유치에 성공하여 관광지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함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8부. 끝.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금액
총계	힐링 사업소	총 18건	주의 13 시정 5		1건 605,000원
1	복무, 서무 (4)	◦ 각종 휴가 사용 시 시스템 입력 등 부적정	주의		
2		◦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준수	주의		
3		◦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소홀	시정		
4		◦ 공무원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관리교육 소홀	주의		
5	예산, 회계, 계약 (10)	◦ 예산편성 부적정	주의		
6		◦ 회계관계 공무원 대리지정 및 이동보고 소홀	주의		
7		◦ 업무추진비 집행 등 소홀	주의		
8		◦ 강사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	시정		
9		◦ 무인경비 용역비 지급 부적정	주의		
10		◦ 인지세 납부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시정		
11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소홀	주의		
12		◦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주의		
13		◦ 물품 구입 집행 전 일상감사 미이행	주의		
14		◦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추진 소홀	주의		
15	공유재산, 물품 (2)	◦ 영동와인터널내 판매시설 관리 소홀	시정		
16		◦ 공용차량 운행관리 부적정	주의		
17	시설공사 (2)	◦ 시설공사 준공신고서 검토 소홀	시정		회수 605,000원
18		◦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주의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각종휴가 사용 시 시스템 입력 등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내역

사용일	성명	직급	구분	부적정사항	비고
18.05.09.	A	**7급	공가	공가사유미해당(도전입시험응시)	
19.01.07.	B	**6급	특별휴가	자녀돌봄휴가를 공가로 등록	
19.07.10.	B	**6급	특별휴가	특가구분“경조사휴가”선택	
20.05.11.	C	**6급	특별휴가	사유에“치과치료”입력	
20.06.05.	C	**6급	특별휴가	사유에“치과치료”입력	
20.08.19.	D	**7급	특별휴가	경조사휴가를 공가로 등록	
21.02.18.	E	**6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입력	
21.03.12.	F	**연구사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입력	
21.04.01.	G	**지도사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입력	
21.04.02.	E	**6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입력	
21.04.09.	H	**9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입력	
21.04.28.	I	**7급	대체휴무	당직근무일 미입력	

【위법부당사항】

- 공무원 휴가는 행정기관(부서)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를 제외한 모든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예시: 비상근무 특별휴가(행정과-7643), 자녀 졸업식 참석, 본인결혼 등)입력하고 결재권자는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허가토록 되어 있으며,
- 행정과에서는 공무원 특별휴가 사용 및 복무제도(특별휴가, 당직근무) 관련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음.

✓ 준수사항 (휴가사용 오입력도 복무관리 지적사항에 해당)

- 당직 대체휴무시 반드시 근무일 입력 : (예시) 1.2(일) 일직근무

- 연가를 제외한 특별휴가 : 증빙 반드시 첨부(첨부파일) / 사유입력 철저

⇒ 경조사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사유 자세히 입력

-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한 때는 규정되어 있으나, 전입시험 응시는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럼에도, 힐링사업소에서는 18. 05. 09.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도전입시험 응시에 대해 공가처리 하였고, 19. 1. 7. 외 1건의 경우 특별휴가사유에 해당하나 공가로 오등록 하였으며, 19. 07. 10. 포상휴가에 해당하는 건을 “경조사휴가” 로 선택하여 입력, 20. 05. 11.외 1건은 특별휴가 사유에 “치과치료” 를 입력하였고, 21. 2. 18. 외 6건의 대체휴무에 대해 당직근무일을 미입력 하는 등 복무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 준수

【현 황】

○ 당직근무 시 청사 무인전자 보안장치 개폐 지연현황

구분	근무일자	개폐시간		당직근무자		비고
		해 제	세 트	직 급	성 명	
1	2018. 1. 4.(목)	08:06:15	18:37:10	**7급	J	2018. 1. 3. 숙직
2	2018. 1.10.(수)	08:07:15	22:39:28	**7급	K	2018. 1. 9. 숙직
3	2018. 1.12.(월)	08:02:46	22:15:54	**직	L	2018. 1.11. 일직
4	2018. 5.18.(금)	08:00:42	18:20:24	**7급	K	2018. 5.17. 숙직
5	2018. 9. 7.(금)	08:25:36	21:02:24	**7급	K	2018. 9. 6. 숙직
6	2018. 9.12.(수)	08:01:13	18:26:23	**6급	M	2018. 9.11. 숙직
7	2018. 9.16.(일)	08:53:14	17:59:29	**7급	A	2018. 9.16. 일직
8	2018.10.31.(수)	08:06:17	20:32:34	**7급	N	2018.10.30. 숙직
9	2018.11.06.(화)	08:05:11	18:19:39	**연구사	O	2018.11. 5. 숙직
10	2018.12.11.(화)	08:09:10	23:05:42	**6급	M	2018.12.10. 숙직
11	2019. 4.10.(수)	08:10:07	21:27:37	**6급	M	2019. 4. 9. 숙직
12	2019. 9.23.(월)	08:28:08	22:04:51	**6급	P	2019. 9.22. 일직
13	2019. 9.30.(월)	08:01:07	21:03:48	**7급	Q	2019. 9.29. 일직
14	2019.12. 7.(토)	08:53:00	17:51:11	**6급	C	2019.12. 7. 일직
15	2019.12.30.(월)	08:00:56	18:35:00	**6급	E	2019.12.29. 일직
16	2020. 4.30.(목)	08:54:40	17:59:33	**7급	R	2020. 4.30. 숙직
17	2020. 9.19.(토)	09:03:26	22:40:42	**7급	Q	2020. 9.19. 일직
18	2020.10. 1.(목)	08:44:37	17:59:49	**6급	M	2020.10. 1. 일직
19	2020.12. 6.(일)	09:00:14	21:27:15	**7급	Q	2020.12. 6. 일직
20	2021. 3.20.(토)	09:04:52	18:04:04	**6급	S	2021. 3.20. 일직

※ 힐링사업소 제출자료(청사 무인전자 보안장치 개폐 전산자료)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2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규칙」 제4조 당직의 구분에는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며, 제8조 제3항에 따라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결과 상황보고(야간 사건사고 발생 상황,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를 면장에게 하여야 함.
※ 제19조에 따라 읍면에서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준용
- 그러나, 힐링사업소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현황]과 같이 **7급 J 외 12명은 당직근무(일직 및 숙직) 등을 하면서 출근 시 16회 지각(평일 당직근무자의 경우 익일 오전 08:00까지 무인전자 보안장치를 해제 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무인전자 보안장치 해제를 지연하였고, 퇴근 시 4회 무인전자 보안장치를 18:00시 이전에 작동 하는 등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소홀

【현 황】

○ 업무 인계·인수 전자결재 내역

연번	인계자		인수자		담당일	전자결재 여부	비고
	직급	성명	직급	성명			
1	**7급 **8급	T U	**9급	W	2020.11.16.	부	운영팀
2	**8급	V	**9급	H	2020.11.16.	부	개발팀
3	**6급	M	**6급	X	2021.01.10.	여	운영팀
4	**직	L	청원**	Y	2021.01.10.	여	운영팀
5	**7급	Q	**7급	I	2021.01.10.	여	개발팀

【위법부당사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 제61조에 따라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 철저[행정과-19286(2020. 9.11.)호]」 공문을 시행하여 모든 군 소속 공무원은 인사이동(조직개편, 업무분장 변동 포함)에 따른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를 이행하되, 팀장급은 온나라 인계·인수 입력 완료 후 인계인수서를 출력하여 행정과로 제출하고, 팀원은 온나라 인계·인수 입력 완료 후 인계인수서를 부서장 결재 후 자체보관 토록 하였음.
- 그러나, 군수님 지시사항 이후 힐링사업소 직원들의 업무 인계·인수 전자결재 내역을 감사일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현황]과 같이 5명의 인사이동(인사발령 및 업무분장 조정) 중 신규직원 2명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부서장 결재를 받지 않는 등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이행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누락된 인계·인수를 이행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소홀

【현 황】

관리부서	사업명	대상자		채용 교육	정기교육				비고
		근로자수	근로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운영팀	영동와인터널운영	1	2020.01.02.~12.31.	미 실시	미 실시	6시간	12시간	6시간	공무직
운영팀	힐링사업소 청사관리	1	2020.01.06.~12.30.	미 실시	미 실시	6시간	12시간	6시간	
운영팀	힐링관광지 산림숲 관리	1	2020.01.03.~12.30.	미 실시	미 실시	6시간	12시간	6시간	
운영팀	영동와인터널운영	4	2020.01.03.~12.30.	미 실시	미 실시	6시간	12시간	6시간	
운영팀	영동와인터널운영	1	2020.01.03.~02.14.	미 실시	미 실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중도 퇴사
테마농업팀	과일나라테마공원 프로그램 운영보조	1	2020.07.07.~12.27.	6시간 (미충족)	해당 없음	해당 없음	6시간	6시간	
테마농업팀	과일나라테마공원 프로그램 운영보조	1	2020.01.06.~02.10.	미 실시	미 실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중도 퇴사
테마농업팀	과일나라테마공원 조경관리	1	2020.04.01.~12.13.	미 실시	해당 없음	6시간	12시간	6시간	
테마농업팀	과일나라테마공원 과원관리	5	2020.04.01.~12.13.	미 실시	해당 없음	6시간	12시간	6시간	
테마농업팀	과일나라테마공원 환경정비	2	2020.01.06.~12.28.	미 실시	미 실시	6시간	12시간	6시간	
테마농업팀	과일나라테마공원 세계관리조경원 관리	1	2020.01.06.~12.28.	미 실시	미 실시	6시간	12시간	6시간	
운영팀	영동와인터널운영	1	2021.01.10.~현재	8시간	미 실시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공무직
운영팀	힐링사업소 청사관리	1	2021.01.04.~12.30.	8시간	4.5시간 (미충족)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운영팀	영동와인터널운영	1	2021.02.03.~12.30.	미 실시	4.5시간 (미충족)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관리부서	사업명	대상자		채용 교육	정기교육				비고
		근로자수	근로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운영팀	영동와인터널운영	2	2021.03.15.~12.30.	6.5시간 (미충족)	미실시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운영팀	힐링관광지 산림숲 관리	1	2021.03.15.~12.30.	6.5시간 (미충족)	미실시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테마농업팀	테마공원 과원 및 조경수 관리	5	2021.03.02.~10.19.	미실시	4.5시간 (미충족)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테마농업팀	테마공원 과원 및 조경수 관리	1	2021.03.02.~03.08.	4.5시간 (미충족)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중도 퇴사
테마농업팀	테마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3	2021.01.04.~12.18.	8시간	4.5시간 (미충족)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테마농업팀	체형프로그램 운영 지도 교사	1	2021.03.02.~10.19.	미실시	4.5시간 (미충족)	미도래	미도래	미도래	

※ 힐링사업소 제출 감사자료(p.55 ~ p.56)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¹⁾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 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 가. 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등

- 이에 따라, 부서에서는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신규 채용 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의 신규채용교육을 이행하여야 하며, 채용 이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분기별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행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그러나, 2020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힐링사업소에서 채용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황]과 같이 신규 채용 시 교육 및 정기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예산편성 부적정

【현 황】

○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임차료 예산편성 현황

제품	월관리비(원)	설치위치	예산과목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정수기	35,900	테마공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정수기	35,900	테마공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정수기	55,900	와인터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정수기	49,500	와인터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정수기	36,100	테마공원(학습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정수기	32,900	테마공원(학습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정수기	55,900	테마공원(학습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기청정기	55,900	테마공원(학습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기청정기	55,900	테마공원(학습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기청정기	55,900	테마공원(학습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기청정기	55,900	와인터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기청정기	55,900	와인터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기청정기	55,900	와인터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기청정기	55,900	와인터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기청정기	55,900	와인터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비데	23,900	테마공원(학습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비데	23,900	테마공원(학습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비데	23,900	테마공원(학습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비데	23,900	테마공원(학습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비데	23,900	테마공원(학습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비데	23,900	테마공원(학습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 부적정 현황

건 명	편성과목	적정과목	비고
웰니스단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테마공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공공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와인터널 무인경비시설 요금	공공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테마공원 무인경비 용역비	공공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위법부당사항】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 하여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 하며, 힐링사업소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음.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비고
힐링타운	힐링타운 운영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	
힐링타운	힐링타운 운영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보조)	
힐링타운	힐링타운 운영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보조)	
힐링타운	힐링타운 운영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	
힐링타운	힐링타운 운영	투자선도지구지원(레인보우힐링타운조성)(보조)	
힐링타운	힐링타운 운영	지역개발사업(힐링타운광장)(보조)	
힐링타운	힐링타운 운영	지역개발사업(연결도로)(보조)	
힐링타운	힐링타운 운영	지역개발사업(레인보우힐링타운조성)(보조)	
힐링타운	힐링타운 운영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보조)	
힐링타운	힐링타운 운영	와인터널 운영	
힐링타운	힐링타운 운영	레인보우 힐링타운 운영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힐링관광지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보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힐링관광지	웰니스단지 관리	
테마농업조성	테마농업육성	테마공원관리및운영	
테마농업조성	테마농업육성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보조)	
테마농업조성	테마농업육성	농촌테마공원연계프로그램개발(보조)(전환사업)	
테마농업조성	테마농업육성	지역균형발전기반조성사업(보조)	
행정운영경비(힐링사업소)	기본경비	기본경비	
재무활동(힐링사업소)	보전지출	보조금반환	
재무활동(힐링사업소)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지출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는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럼에도, 힐링사업소에서는 테마공원 및 와인터널 운영에 필요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기본경비에 일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로 편성해야할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무인경비 용역비를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계관계 공무원 대리지정 및 이동보고 소홀

【현 황】

○ 대리지정 부적정 현황

(단위:원)

회계관직 (성명)	부재일	지급명령(원인행위)승인		지출금액	비 고
		번호	건수		
합 계			86	3,951,312,510	
지출원 (M)	18.05.31.	278~279	2	19,972,870	직무대리지정 없이 당초 지출원 권한으로 지급명령 승인
지출원 (M)	19.01.17.	1~15	15	27,189,030	재무관(AA)부재중 지출원이 재무관 권한을 대리하면서 지출원 경직
지출원 (M)	19.12.30.	990~1023	34	3,617,426,640	직무대리지정 없이 당초 지출원 권한으로 지급명령 승인
지출원 (M)	20.01.23.	23~47	25	121,034,830	직무대리(C)지정은 하였으나, 당초 지출원 시스템 권한으로 지급명령 승인
지출원 (M)	20.09.23.	661~663	3	105,549,090	직무대리지정 없이 당초 지출원 권한으로 지급명령 승인
재무관 (Z)	21.03.09.	129~135	7	60,140,050	직무대리(AB)지정 하였으나 당초 재무관 시스템 권한으로 원인행위 승인

○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 현황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발령일자	변경전	변경후	비고
징수·재무관	18.01.01.	-	AC	보고
	19.01.01.	AC	AA	미보고
	20.01.01.	AA	Z	미보고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18.01.01.	-	M	보고
	21.01.10.	M	X	보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18.01.01.	-	AD	보고
	19.01.01.	AD	C	미보고
	20.07.10.	C	E	보고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공무원이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회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그럼에도, 힐링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 5. 31. 외 5일에 대하여 지출원부재시 직무대리지정 없이 당초 지출원의 시스템 권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승인하거나, 재무관 부재시 지출원이 재무관과 지출원을 겸직하였고, 직무대리지정은 하였으나 시스템 처리는 당초 지출원의 권한으로 승인하는 등 총86건, 3,951백만원의 지출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 3건을 보고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등 소홀

【현 황】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현황[현황1]

지급일자	적요	집행액 (원)	수혜자	지급과목	해소과목
2020.04.01.	직원 출산에 따른 축하 꽃다발	57,000	이**	부서운영	-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현황[현황2]

연도	공개 세부내역	미공개 세부내역	비고 (미공개 기간)
2018년	-	-	12개월
2019년	-	-	12개월
2020년	2020. 1월 ~ 3월, 5월 8월 ~ 12월	2020. 4월, 6월 ~ 7월	3개월
2021년	2021. 1월 ~ 3월	-	-

※ 영동군 홈페이지 정보공개 업무추진비 공개자료 재구성

【위법부당사항】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서 전체직원의 사기양양과 실·과·소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하는 경비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부서형태를 유지하는 기관의 보조운영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공통 경비에 한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하여 집행이 가능하나, 부서장의 활동경비나 소수의 일부직원을 위한 경비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그러나, 힐링사업소에서는 통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한 경우에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현황1]과 같이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이 아닌 특정인을 위해 ‘직원 출산에 따른 축하 꽃다발’을 구입하는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소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힐링사업소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우리군 홈페이지에 부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였어야 하나, [현황2]와 같이 담당자가 변경된 2020년 이후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공개되어 있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강사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

【현 황】

○ 붙임내역 참조

【위법부당사항】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3%,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0%], 지방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타소득(일시적 강연료 및 자문료 등)의 필요경비율

기간	필요경비율	원천징수 세율	과세최저한
~ 2018년 3월까지	80%	4.4%	250,000원
2018년 4월 ~ 12월	70%	6.6%	166,666원
2019년 이후	60%	8.8%	125,000원

○ 이에 따른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미리 징수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며,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일컬음.

- 그러나, 힐링사업소에서는 [붙임1]과 같이 2018년 ~ 2019년 과일나라테마공원 프로그램운영 등에 따른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개인별 강사수당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붙임2]에서와 같이 원천징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누락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1] 강사수당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현황

[단위 : 원]

지급일	교육명 (강사명)	기 간	강사수당 지급액				미공제 세액
			소득금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실지급액	
합계			9,650,000	372,000	37,200	9,240,800	164,980
2018.01.26.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8.01.18. 2018.01.26.	100,000	-	-	100,000	3,300
2018.01.31.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8.01.23.	50,000	-	-	50,000	1,650
2018.03.07.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8.03.06.	50,000	-	-	50,000	1,650
2018.03.27.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8.03.16.	50,000	-	-	50,000	1,650
2018.04.19.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8.04.07. 2018.04.11.	100,000	-	-	100,000	3,300
2018.05.04.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D)	2018.04.25.	50,000	-	-	50,000	1,650
2018.05.16.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8.05.03.	50,000	-	-	50,000	1,650
2018.05.30.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B)	2018.05.26.	50,000	-	-	50,000	1,650
2018.06.19.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8.06.09.	50,000	-	-	50,000	1,650

지급일	교육명 (강사명)	기 간	강사수당 지급액				미공제 세액
			소득금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실지급액	
2018.06.19.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8.06.14.	50,000	-	-	50,000	1,650
2018.06.19.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B)	2018.06.09.	50,000	-	-	50,000	1,650
2018.06.26.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8.06.16. 2018.06.19.	100,000	-	-	100,000	3,300
2018.06.26.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C)	2018.06.16.	50,000	-	-	50,000	1,650
2018.06.28.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8.06.27.	50,000	-	-	50,000	1,650
2018.06.28.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B)	2018.06.27.	50,000	-	-	50,000	1,650
2018.08.07.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C)	2018.07.25.	50,000	-	-	50,000	1,650
2018.09.10.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8.09.12.	50,000	-	-	50,000	1,650
2018.09.12.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D)	2018.09.05.	75,000	-	-	75,000	2,470
2018.10.25.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B)	2018.10.10.	50,000	-	-	50,000	1,650
2018.10.31.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8.10.19.	50,000	-	-	50,000	1,650
2018.10.31.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D)	2018.10.21.	75,000	-	-	75,000	2,470
2018.11.14.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8.11.07.	50,000	-	-	50,000	1,650
2018.11.14.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협동조합)	2018.11.09.	75,000	-	-	75,000	2,470
2018.11.28.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영동****)	2018.11.23.	50,000	-	-	50,000	1,650
2018.12.04.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D)	2018.11.28.	50,000	-	-	50,000	1,650
2018.12.26.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8.12.09.	50,000	-	-	50,000	1,650
2018.12.26.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D)	2018.12.12.	75,000	-	-	75,000	2,470
2018.12.26.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B)	2018.12.22.	50,000	-	-	50,000	1,650
2019.01.31.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9.01.29.	50,000	-	-	50,000	1,650
2019.04.04.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9.03.26. ~ 2019.03.28.	150,000	-	-	150,000	4,950

지급일	교육명 (강사명)	기 간	강사수당 지급액				미공제 세액
			소득금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실지급액	
2019.05.02.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9.04.25.	50,000	-	-	50,000	1,650
2019.05.15.	영동와인터널 5월 가정의달 행사 체험프로그램 (BL)	2019.05.05.	100,000	-	-	100,000	3,300
2019.05.15.	영동와인터널 5월 가정의달 행사 체험프로그램 (BK)	2019.05.05.	100,000	-	-	100,000	3,300
2019.05.15.	영동와인터널 5월 가정의달 행사 체험프로그램 (BM)	2019.05.05.	100,000	-	-	100,000	3,300
2019.05.15.	영동와인터널 5월 가정의달 행사 체험프로그램 (BI)	2019.05.05.	100,000	-	-	100,000	3,300
2019.05.21.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9.05.08. ~ 2019.05.09.	100,000	-	-	100,000	3,300
2019.05.21.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9.05.10.	50,000	-	-	50,000	1,650
2019.05.21.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B)	2019.05.02. ~ 2019.05.03.	100,000	-	-	100,000	3,300
2019.06.05.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9.05.31.	50,000	-	-	50,000	1,650
2019.06.05.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J)	2019.05.30.	50,000	-	-	50,000	1,650
2019.06.19.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9.06.05.	50,000	-	-	50,000	1,650
2019.07.04.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9.06.18. 2019.06.22.	100,000	-	-	100,000	3,300
2019.07.04.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J)	2019.06.22.	50,000	-	-	50,000	1,650
2019.07.16.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B)	2019.07.13.	50,000	-	-	50,000	1,650
2019.07.16.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D)	2019.07.11.	50,000	-	-	50,000	1,650
2019.07.31.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1주차 (BH)	2019.07.20. ~ 2019.07.21.	200,000	16,000	1,600	182,400	-
2019.07.31.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1주차 (BL)	2019.07.20. ~ 2019.07.21.	200,000	16,000	1,600	182,400	-
2019.08.09.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2주차 (BF)	2019.07.20. ~ 2019.07.21.	200,000	16,000	1,600	182,400	-
2019.08.09.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2주차 (BK)	2019.07.27. ~ 2019.07.28.	200,000	16,000	1,600	182,400	-
2019.08.14.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9.08.30.	50,000	-	-	50,000	1,650
2019.08.14.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3주차 (BF)	2019.08.03.	100,000	-	-	100,000	3,300

지급일	교육명 (강사명)	기 간	강사수당 지급액				미공제 세액
			소득금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실지급액	
2019.08.14.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3주차 (BG)	2019.08.03.	100,000	-	-	100,000	3,300
2019.08.14.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3주차 (BH)	2019.08.04.	100,000	-	-	100,000	3,300
2019.08.14.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3주차 (BL)	2019.08.04.	100,000	-	-	100,000	3,300
2019.08.21.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9.09.06.	100,000	-	-	100,000	3,300
2019.08.21.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4주차 (X)	2019.08.10.	100,000	-	-	100,000	3,300
2019.08.21.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4주차 (BG)	2019.08.10.	100,000	-	-	100,000	3,300
2019.08.21.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4주차 (BH)	2019.08.11.	100,000	-	-	100,000	3,300
2019.08.21.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4주차 (BL)	2019.08.11.	100,000	-	-	100,000	3,300
2019.08.22.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5주차 (O)	2019.08.15.	100,000	-	-	100,000	3,300
2019.08.22.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5주차 (BG)	2019.08.15.	100,000	-	-	100,000	3,300
2019.08.22.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5주차 (O)	2019.08.17.	100,000	-	-	100,000	3,300
2019.08.22.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5주차 (BE)	2019.08.17.	100,000	-	-	100,000	3,300
2019.08.22.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5주차 (BH)	2019.08.18.	100,000	-	-	100,000	3,300
2019.08.22.	영동와인터널 여름 성수기 주말 체험 프로그램 5주차 (BK)	2019.08.18.	100,000	-	-	100,000	3,300
2019.09.11.	영동와인터널 포도축제 기간중 체험프로그램 (BH)	2019.08.31. ~ 2019.09.01.	300,000	24,000	2,400	273,600	-
2019.09.11.	영동와인터널 포도축제 기간중 체험프로그램 (BL)	2019.08.31. ~ 2019.09.01.	300,000	24,000	2,400	273,600	-
2019.09.11.	영동와인터널 포도축제 기간중 체험프로그램 (BG)	2019.08.31. ~ 2019.09.01.	300,000	24,000	2,400	273,600	-
2019.09.11.	영동와인터널 포도축제 기간중 체험프로그램 (BK)	2019.08.31.	150,000	12,000	1,200	136,800	-
2019.09.11.	영동와인터널 포도축제 기간중 체험프로그램 (BF)	2019.09.01.	150,000	12,000	1,200	136,800	-
2019.10.14.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9.09.27.	50,000	-	-	50,000	1,650
2019.10.14.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B)	2019.09.25.	50,000	-	-	50,000	1,650

지급일	교육명 (강사명)	기 간	강사수당 지급액				미공제 세액
			소득금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실지급액	
2019.10.17.	영동와인터널 국악와인축제 기간중 체험프로그램 (BG)	2019.10.03. 2019.10.05. ~ 2019.10.06.	450,000	36,000	3,600	410,400	-
2019.10.17.	영동와인터널 국악와인축제 기간중 체험프로그램 (O)	2019.10.03. 2019.10.05. ~ 2019.10.06.	300,000	24,000	2,400	273,600	-
2019.10.17.	영동와인터널 국악와인축제 기간중 체험프로그램 (BF)	2019.10.03.	150,000	12,000	1,200	136,800	-
2019.10.17.	영동와인터널 국악와인축제 기간중 체험프로그램 (BE)	2019.10.03.	150,000	12,000	1,200	136,800	-
2019.10.17.	영동와인터널 국악와인축제 기간중 체험프로그램 (BH)	2019.10.05. ~ 2019.10.06.	300,000	24,000	2,400	273,600	-
2019.10.17.	영동와인터널 국악와인축제 기간중 체험프로그램 (BL)	2019.10.06.	150,000	12,000	1,200	136,800	-
2019.11.14.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9.10.15. 2019.10.18. 2019.10.22. 2019.10.25.	250,000	20,000	2,000	228,000	-
2019.11.14.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B)	2019.10.17.	50,000	-	-	50,000	1,650
2019.11.19.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9.11.01. 2019.11.15.	100,000	-	-	100,000	3,300
2019.11.19.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D)	2019.11.08	50,000	-	-	50,000	1,650
2019.11.22.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9.11.20.	50,000	-	-	50,000	1,650
2019.11.22.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D)	2019.11.19.	50,000	-	-	50,000	1,650
2019.11.29.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A)	2019.11.27.	50,000	-	-	50,000	1,650
2019.11.29.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운영 (BJ)	2019.11.27.	50,000	-	-	50,000	1,650
2019.12.30.	영동와인터널 크리스마스 체험프로그램 (BF)	2019.12.21.	150,000	12,000	1,200	136,800	-
2019.12.30.	영동와인터널 크리스마스 체험프로그램 (O)	2019.12.21.	150,000	12,000	1,200	136,800	-
2019.12.30.	영동와인터널 크리스마스 체험프로그램 (BK)	2019.12.21.	150,000	12,000	1,200	136,800	-
2019.12.30.	영동와인터널 크리스마스 체험프로그램 (BH)	2019.12.22.	150,000	12,000	1,200	136,800	-
2019.12.30.	영동와인터널 크리스마스 체험프로그램 (BL)	2019.12.22.	150,000	12,000	1,200	136,800	-
2019.12.30.	영동와인터널 크리스마스 체험프로그램 (BE)	2019.12.22.	150,000	12,000	1,200	136,800	-

[붙임2] 강사수당 원천징수 개인별 미징수 현황

연도	강사명	강의횟수	강사수당 지급액	미공제세액	비고
합계		92회	9,650,000	150,960	
2018	BA	14회	850,000	28,050	
2018	영동****	1회	50,000	0	단발성 강의 과세최저한미달
2018	BB	5회	250,000	8,250	
2018	BC	2회	100,000	3,300	
2018	BD	5회	325,000	10,710	
2018	*****협동조합	1회	75,000	0	단발성 강의 과세최저한미달
2019	BA	15회	1,250,000	33,000	
2019	BE	3회	400,000	3,300	
2019	BF	5회	750,000	3,300	
2019	BG	5회	1,050,000	9,900	
2019	O	4회	650,000	6,600	
2019	*	1회	100,000	0	단발성 강의 과세최저한미달
2019	BH	7회	1,250,000	9,900	
2019	타	1회	100,000	0	단발성 강의 과세최저한미달
2019	BJ	3회	150,000	4,950	
2019	BB	4회	250,000	8,250	
2019	BK	5회	700,000	6,600	
2019	BD	3회	150,000	4,950	
2019	BL	7회	1,100,000	9,900	
2019	BM	1회	100,000	0	단발성 강의 과세최저한미달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무인경비 용역비 지급 부적정

【현 황】

○ 무인경비 용역비 선금 지급 현황

(단위:원)

건명	계약금액	지급액	지급일	비 고
2020년 과일나라테마공원 무인경비용역	4,404,000	4,037,000	20.01.30.	1개월분 할인
2020년 와인터널 무인경비 용역	6,000,000	5,500,000	20.01.23.	1개월분 할인
2021년 과일나라테마공원 무인경비용역	4,404,000	4,037,000	21.01.20.	1개월분 할인
2021년 와인터널 무인경비 용역	6,300,000	5,775,000	21.01.22.	1개월분 할인

【위법부당사항】

-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에 따르면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제1항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 운임 및 사례금,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관보 등 정기간행물의 대금,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등 15가지의 경우임.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제17조(검사)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나,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힐링사업소에서는 2020년~2021년 과일나라테마공원 및 와인터널 무인경비 용역 건에 대하여 1월분 연납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보증서 등의 채권확보 없이 1년치 용역비를 전액 선납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인지세 납부 및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내역

(단위:천원)

건 명	지급일	지급액	인지세		채권		비고
			납부액	기준액	매입가	적정가	
과일나라테마공원 물품(다목적 운반차)구입	18.05.30.	12,705	0	0	190	170	인지세, 채권 부적정
영동와인터널 개장식 행사대행 용역	18.10.25.	12,530	0	20	300	280	인지세, 채권 부적정
영동와인터널 홍보물품(오크통) 제작 설치	18.11.01.	20,148	0	20	270	270	인지세 부적정
영동와인터널 관명사인, 문자 전송 SW제작 설치	18.11.28.	10,030	0	20	130	130	인지세 부적정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모형도 제작	18.11.28.	19,780	0	20	300	260	인지세, 채권 부적정
영동와인터널 종합안내도 제작	18.11.30.	19,872	0	20	270	270	인지세 부적정
영동와인터널 관광안내도 및 홍보물 거치대 제작설치	18.12.28.	20,030	0	20	0	270	인지세, 채권 부적정
과일나라테마공원 곤충체험장 전시물 및 곤충 구입	20.06.30.	11,860	20	20	260	160	채권매입 부적정

【위법부당사항】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기재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 아울러,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위반시의 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당해 기재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약식)계약서에 첨부 함.
- 또한, 지역개발채권(공채)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별표1』(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로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10,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힐링사업소에서는 2018. 05. 30. 지급한 과일나라테마공원 물품 계약 외 7건에 대해 인지세 납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누락된 인지세 납부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소홀

【현 황】

○ 부적정 내역

(단위:천원)

건 명	대상물품	지급일	금액	계약대상자 (소재지)	직접생산여부	비고
영동와인터널 종합안내도 제작 설치	안내판 (5512171801)	18.11.30.	19,872	**인쇄사 (청주시)	부	
영동와인터널 관광안내도 및 홍보물거치대 제작 설치	안내판 (5512171801)	18.12.28.	20,030	**애드 (청주시)	부	

【위법부당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르면 안내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 대상이며 그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전구류(LED포함), 아크릴, 포맥스 등을 구입, 이를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프레임 조립 및 내·외부 부속구조물을 제작하고

자체에서 생산한 실사출력물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그럼에도, 힐링사업소에서는 2018. 11. 30. 지급한 영동와인터널 종합안내도 제작설치 계약 외 1건에 대해 계약대상자 선정 시 직접 생산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직접생산하지 않는 부적정업체(인쇄업 및 광고업)와 계약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현 황】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처리실적

대상업무	감사자 추출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적기처리 건수	적기 처리율	적기승인 건수	적기 승인율	미처리 건수	비고
지방재정	82건	82건	100%	79건	96.3%	70건	85.4%	-건	

【위법부당사항】

- 전 부서에서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확인하고 적기에 조치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그러나, 힐링사업소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현황]과 같이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내역(감사자추출건수)에 대하여 처리건수 대비 적기승인건수를 확인한 결과, 적기승인율이 우리군 평균(90.0%)보다 낮은 85.4%로 확인되는 등 공직비리 사전예방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물품 구입 집행 전 일상감사 미이행

【현 황】

(단위: 천원)

건명	사업량	집행일 (계약일)	계약방법	추정금액	지급액	비고
와인터널 모션인식 제작 및 설치	LED인트랙티브 설치 1식	19.07.30. (19.08.01.)	수의계약	55,000	50,050	
영동와인터널 LED스크린 제작설치	LED전광판 설치 1식	20.05.14. (20.05.18.)	수의계약	27,500	25,300	

【위법부당사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일상감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제21조(일상감사의 처리), 「영동군 일상감사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객관적 위치에서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제도인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건에 대하여 집행 전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힐링사업소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와인터널 모션인식 제작 및 설치’, ‘영동와인터널 LED스크린 제작설치’ 이상 2건에 대하여 물품 구입을 추진하면서 최종 집행 전에 거쳐야 할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구매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추진 소홀

【현 황】

○ 2018년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 내역

연번	공사명	도급자	도급액 (원)	준공검사일	하자보증기간		비고
					시작일	종료일	
합계	10건						
1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공사(토목)	**건설(주)	2,817,629,700	2016-11-29	2016-11-29	2018-11-28	
2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공사(조경)	**건설(주)	2,399,436,760	2016-11-29	2016-11-29	2018-11-28	
3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아열대과원 조성공사	**건설(주)	240,221,000	2017-09-27	2017-09-27	2019-09-26	
4	과일나라테마공원 체험장 조성공사	**건설(주)	204,866,700	2017-09-24	2017-09-24	2019-10-09	
5	과일나라테마공원 온실 지열에너지 설치공사	**기업(주)	196,261,000	2016-12-01	2016-12-01	2019-11-30	
6	과일나라테마공원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 공사	**건설(주)	94,031,190	2017-03-23	2017-03-23	2020-03-24	
7	세계과일조경원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공사	**상사	13,300,000	2018-05-25	2018-05-25	2020-05-24	
8	레인보우 관광활성화 사업 전기공사	(주)**전기	90,139,500	2018-07-16	2018-07-16	2020-07-15	
9	레인보우 힐링타운 기반시설 연결도로	(주)**건설	170,784,330	2018-07-03	2018-07-03	2021-07-02	
10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공사(건축)	**건설(주)	2,125,323,440	2016-11-29	2016-11-29	2021-11-28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 힐링사업소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에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공사(토목)」 등 10건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영동와인터널내 판매시설 관리 소홀

【현 황】

위 치	용 도	면적(㎡)	수허가자	최 초 허 가 기간	비 고
계	3개소	741			
영동와인 터널 내	식당	345	(주)영동**** 배**	`18.10.11 ~ `20.10.10	연 사용료 8,558,550원 (VAT포함)
	와인판매장	299			
	출구판매장	97			

※ 코로나19로 인한 휴장기간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운영계획중.

【위법부당사항】

- 공유재산(영동와인터널 내 판매체험시설) 사용허가(힐링사업소-3596, '18.09.21)호로 수허가자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면서 부기한 허가조건 제10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에 따르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납부하여야 하며, 특수조건 제5조(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 등)에서는 사용인은 판매·체험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 수도, 연료비, 쓰레기봉투, 정수기 필터교체 등 일체의 사용료 및 시설운영에 따른 부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사용량(기간)에 따라 매월 별도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힐링사업소에서는 판매·체험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료나 상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매월 정산하거나 수허가자가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량만큼 개별납부가 가능하도록 계량기 설치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그러나, 힐링사업소에서는 2018. 10. 1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허가를 하면서 수허가자가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기료 및 상수도요금 등 공과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사후 정산절차를 하지 아니할 경우 수허가자가 개별 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한 사실이 없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 부담 방안을 마련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용차량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

【현 황】

○ 공용차량 현황

- 차 종 : 소형화물
- 등록번호 : 84두0891
- 등록일 : 2018. 3. 2.
- 누적운행현황 : 2021. 4. 29.기준 / 8,788km
- 최종운행일지 작성 : 21.04.09. / 8,600km

○ 출장등록 부적정 운행내역

[단위:km]

연번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거리	운행내역	출장지	비고
1	18.04.01.	O	140	산불 비상 근무	영동, 상촌	공용차량 미사용으로 출장등록
2	18.08.07.	CA	51	테마공원 관리및운영	영동	공용차량 미사용으로 출장등록
3	19.11.19.	O	62	테마공원 관리 업무 추진	영동	공용차량 미사용으로 출장등록
4	20.02.27.	F	73	체험프로그램 협의	양강	공용차량 미사용으로 출장등록
5	20.05.06.	O	10	생활방역 추진	영동	공용차량 미사용으로 출장등록
6	20.07.28.	G	25	농기계수리	영동	출장미등록
7	20.08.26.	G	46	포도과원관리용품구입	영동, 학산	출장미등록
8	20.08.27.	G	10	소내사용	영동	출장미등록
9	20.09.04.	G	142	포도과원관리용품구입	영동, 학산	출장미등록
10	20.09.11.	G	59	테마공원 관리(소내운행)	영동	출장미등록
11	20.09.17.	G	59	포도원 체험용품 구입	영동, 학산	출장미등록
12	20.09.18.	G	60	포도분양 운영물품구입	영동, 학산	출장미등록
13	20.10.27.	U	20	토지수용재결업무추진	영동	출장미등록
14	20.10.29.	G	220	수리농기계 회수 및 관리물품 구입	영동	출장미등록
15	20.11.10.	G	31	테마공원 관리	소내사용	출장미등록

연번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거리	운행내역	출장지	비고
16	21.01.12.	G	274	테마공원운영	영동	출장미등록
17	21.01.21.	G	20	테마공원운영	영동	공용차량 미사용으로 출장등록
18	21.01.27.	G	76	테마공원운영	영동	출장미등록
19	21.03.11.	G	104	테마공원 관리 및 물품구입	영동	출장미등록
20	21.03.17.	G	46	테마공원 농기계 수리	영동	출장미등록
21	21.03.29.	G	297	꽃묘장 꽃수령	심천	출장미등록
22	21.04.09.	G	167	테마공원 운영물품구입	영동	출장미등록

○ 유류수불현황 불일치 내역

연번	운행일자	운전자	운행거리	운행내역	급유량(L)	비고
1	18-08-07	CA	51	테마공원 관리및운영	40	유류카드사용내역 없음
2	18-10-10	O	374	테마공원관리및운영	50	유류카드사용내역 없음
3	18-11-19	O	406	테마공원관리및운영	40	유류카드사용내역 없음
4	20-09-11	G	59	테마공원 관리(소내운행)	40	유류카드사용내역 없음
5	20-10-29	G	220	수리농기계 회수 및 관리 물품 구입	40	유류카드사용내역 없음
6	21-03-29	G	297	꽃묘장 꽃수령	40	유류카드사용내역 없음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및 제6조(출장의 절차)에 따르면 공무원이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함.
- 아울러, 「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9조(차량 직접운전) 및 제31조(운행종료 등)에 따르면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으며, 차량을 직접 운전한 운전자는 공용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2조(유류사용 정산) 규정에 따라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공무수행에 필요한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출장신청 등록 시 공용차량이용여부는 “사용”으로 신청한 후 차량을 사용하고 운행종료 후 “직원직접운전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주행거리 및 유류사용량을 기록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 그럼에도, 힐링사업소에서는 22건에 대해 출장내역이 없거나 출장신청 시 공용차량 “미사용”으로 신청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운행일지상 급유내역이 있으나 실제 유류카드사용내역이 없는 경우가 6건 있었고, 21. 4. 9. 이후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실제 운행기록과 운행일지가 일치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련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605,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준공신고서 검토 소홀**

【현 황】

(단위: 천원)

공 사 명	계약금액	도 급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계상금액	정산금액	적정금액	회수금액	
계(2건)						605	
와인터널 레스토랑 및 통로 인테리어공사	285,478	(합)**산업 변**	6,863	6,535	6,175	480	제경비 포함
힐링관광지 연계시설 건축사업(주차장)	264,307	(주)**산업 전**	5,447	5,447	5,354	125	"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침 제131조(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하며,
-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 힐링사업소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와인터널 레스토랑 및 통로 인테리어공사」의 1건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도급자가 제출한 감액동의서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금액과 증빙서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상의 사용금액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감액동의서 금액대로 정산 처리하여 공사대금 총605천원(제경비 포함)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과오지급된 공사비 605,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현 황】

공 사 명	도금액 (천원)	도 급 자	계 약 일 (착공일) (준공일)	설계금액(천원)			비고
				총공사금액	도금액	관급액	
와인터널 상부 배수로정비공사	16,940	(주)**건설 김**	2020.09.07 (2020.09.08) (2020.09.24)	21,400	18,420	2,980	

【위법부당사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기준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힐링사업소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와인터널 상부 배수로 정비공사」를 자체설계로 추진하여 발주자가 원가계산을 직접 작성하면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여 원가계산 작성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힐링사업소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